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0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0 - 160호

시행일자 2020. 3. 6.

수 신 국토교통부장관

참 조 건설안전과장

선 결			지	
접	일 자		시	
	시 간		결	
수	번 호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 목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시행에 따른 적정성 여부 질의

1. 국가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이하 ‘점검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과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은 나와 있으나 가칭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 2020.03)」을 만들어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 법령과 지침의 위반사항을 질의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평가기준’ [붙임] 1. PQ평가기준의 가.(1) 사업책임기술자 (가) 자격에 「건진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건축구조기술사 보유만 독점적으로 ‘2

점'으로 하고, 그 외의 「건진법」 기준 특급기술자는 '0점'으로 한 것은, ① 전항에 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를 인정하고서 건축시공분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모순이며, ② 이미 특급기술자 안에 건축구조기술사가 포함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9-1017호, 2019.12.31.)」과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163호, 2019.4.10.)」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다른 입찰용역 평가기준에는 없는 특혜로 삭제하거나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임.

나. '평가기준' [붙임] 1. PQ평가기준의 다. 신용도 (1) 점점·진단평가기준은 다른 법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상의 용역 관련사항으로 본 점점용역의 부실과는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할 것임.

다. 위 PQ평가기준의 마. 가점 (1) 참여업체 구조설계 실적은 설계실적으로서 「시설물 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실적과 같이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실적과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삭제해야 할 것임.

붙임 : (1) 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0.03, 한국토지주택공사) 1부.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